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하부조직 설립 근거 마련 등〉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981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하부조직 설립 근거 마련	2
2.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적립금회계의 신설	5
3. 조세감면 등 근거 규정 마련	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2. 26.
3. 회 부 일 : 2024. 12.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새마을운동조직, 한국자유총연맹과 함께 범국민적인 공익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3대 국민운동단체임. 이 조직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적인 봉사활동과 함께 사회안전망 구축, 공익캠페인 전개, 취약·소외계층에 대한 나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가와 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국민운동단체의 저변 확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은 많이 미흡한 실정으로 조직의 운영과 활동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은 조세감면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조세감면 등에 대한 근거가 없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출연금 또는 기부금을 별도로 회계처리하는 적립금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조세감면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중앙협의회와 하부조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운동단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3조 등).

Ⅲ. 검토의견

1. 하부조직 설립 근거 마련

개정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중앙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시·도에 시·도협의회, 시·군·구에 시·군·구협의회를 두며, 읍·면·동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회 및 하부 조직의 산하에 법인, 직장, 단체협의회를 둘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2조의2(조직)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서울특별시에 중앙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협의회를 두며, 시·군·구에 시·군·구협의회(단, 자치구가 아닌 일반시의 구는 협의회를 새로 설립할 수 없다)를 두고, 읍·면·동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중앙회 또는 시·도협의회, 시·군·구협의회의 산하에 법인, 직장, 단체협의회를 둘 수 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하는데,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는 바르게살기운동을 선도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1989년에 설립된 조직으로, 17개 시·도협의회, 233개 시·군·구협의회, 3,191개의 읍·면·동위원회로 구성되며 회원수가 78만

명에 이르는 등 전국에 걸친 대규모 인적 조직을 형성하고 있음.

개정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중앙회, 시·도협의회, 시·군·구협의회, 읍·면·동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직의 기반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중앙회의 사무소 소재지와 관련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역시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정관에 소재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¹⁾, 현행 정관과 시행령으로도 하부조직을 둘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는 점²⁾³⁾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개정안은 중앙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하고 있는데 향후 중앙회의 소재지를 이전하고자 할 경우 법 개정 절차를 요하

1) 「민법」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2)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정관」제4조(하부조직) ① 중앙회에 다음의 하부조직을 둔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
2. 시·군·구협의회. 다만, 자치구가 아닌 일반시의 구는 협의회를 새로 설립할 수 없다.
3. 읍·면·동위원회

② 중앙회 또는 시·도협의회, 시·군·구협의회의 산하에 법인, 직장, 단체협의회를 둘 수 있다.

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제2조(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하부조직)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의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협의회
2. 시·군·구 협의회
3. 읍·면·동 위원회

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과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는 중앙회 사무소 소재지와 하부 조직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2.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적립금회계의 신설

개정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출연금 또는 특정 목적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중앙회의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적립금회계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出捐金)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u><신설></u>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교부와 그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는 출연금 또는 특정 목적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총연맹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의 사용·관리 및 적립금의 운영에-----.

개정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별도 적립금회계를 둘 수 있도록 함

으로써 중앙회가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등 개별법령에 법적 지원
근거를 두고 있는 타 국민운동단체의 경우 출연금·기부금의 별도 회
계처리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3. 조세감면 등 근거 규정 마련

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출연·기부한 재산에 대해 동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3조의2(조세감면 등) ① 정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출연 또는 기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개정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하여 국민운동단체로서 조직의 기능 및 역할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조직 등 다른 국민운동단체들과의 형평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조세감면 및 과세특례와 관련된 사항은 이미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적용되는 사

항이므로, 개정안은 이를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지원은 개별법에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므로 개별법상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입법 실익이 없다는 입장임.

<조세감면 등에 관한 조문 비교>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조세감면 등) ① 정부는 총연맹에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u>조세를 감면</u>할 수 있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총연맹에 출연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u>소득계산의 특례</u>를 적용할 수 있다.	-	제5조(조세감면 등) ① 정부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u>조세를 감면</u>한다. ② 제3조제3항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에 출연 또는 기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u>과세특례</u>를 적용한다.

문 의 처

02)6788-5338